

光州廣域市西區都市低所得住民住居環境改旋地區共同住宅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定條例案

審 查 報 告

1996 年 2 月

社會都市委員會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1996年 2月 13日 光州廣域市 西區廳長 提出
및提出者
- 나. 回附日字 : 1996年 2月 14日
- 다. 上程日字 : 第54回 西區議會(臨時會) 會期中
第3次 社會都市委員會(1996年 2月29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建設課長 金寅奎)

가. 提 案 事 由

- 본격적인 地方自治制를 實施하기 위하여 光州廣域市西區行政機構設置條例와 光州廣域市西區職制規則의 改定으로 都市開發課가 廢止됨에 따라 光州廣域市西區都市低所得住民住居環境改旋地區共同住宅建立特別會計設置條例를 改定하여 效率的인 運營을 기하려는 것임

나. 主 要 骨 子

○ 洞 條 例 第2條中 第2號 및 第4號 내지 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 第2號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
- 第4號 분임경리관 — 건설과장
- 第5號 채무관리관 — 건설과장
- 第6號 지 출 원 — 도시개발계장
- 第7號 수입금출납원 — 도시개발계장
- 第8號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도시개발계장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吳龍洙)

○ 光州廣域市西區行政機構設置條例와 光州廣域市西區職制規則改定으로 廢止된 都市局 都市開發課 分掌業務中 光州廣域市西區都市低所得 住民 住居環境 改旋地區共同住宅建立 特別會計設置條例를 改定하여 效率的인 業務運營을 기하기 爲한 條例改定으로 審査後 議決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생략

5. 討 論 要 旨 : 생략

6. 審 查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要旨 : 없음

8. 其 他 事 項 : 없음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호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

4호 분임경리관 - 건설과장

5호 재무관리관 - 건설과장

6호 지출원 - 도시개발계장

7호 수입금출납원 - 도시개발계장

8호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 도시개발계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도시국장 2. 분임징수관 - 도시개발과장 3. 경리관 - 도시국장 4. 분임경리관 - 도시개발과장 5. 채무관리관 - 도시개발과장 6. 지출원 - 도시정비계장 7. 수입금출납원 - 도시정비계장 8.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도시정비계장	제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 3. 현행과 같음 4. 분임경리관 - 건설과장 5. 채무관리관 - 건설과장 6. 지출원 - 도시개발계장 7. 수입금출납원 - 도시개발계장 8.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도시개발계장